

【특집】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 이론적 고찰과 한반도에의 적용

김병로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반도에서 왜 화해가 진전되지 않고 공전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절차 혹은 과정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검토에서 화해를 위해서는 상호피해 인정, 사과, 추모, 진실확인, 보상, 용서 등 핵심요소가 필요하고 일련의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한다.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역설적이며 역동적인 현장으로, 상황과 구조,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분리-융합, 실제-관계, 이익-감정, 대안적 화해 등 근원적 성찰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는 상호존재인정과 미래지향적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화해가 진행되었으나, 과거피해인정, 사과, 진실확인 등 초보적인 화해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국가적 논의를 넘어서는 시민사회 수준에서 화해의 절차가 시작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주제어: 화해, 평화, 회복적 정의, 진실확인, 사과, 용서, 트라우마 치유

* 이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0-361-A00017).

I. 화해, 왜 공전하는가?

한반도에 대전환을 가져올 듯 보였던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 선언, 역사적인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이 1년 만에 다시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남북의 지난 분단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약속은 여러 번 있었다. 7.4남북공동성명(1972)과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공동선언(2000), 10.4 선언(2007) 등 만남의 계기마다 화해와 협력을 다짐하며 평화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선언은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지속된 적대적 대립을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수립을 천명한 그야말로 역사적 화해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듭되는 화해의 선언과 약속에서 불구하고 평화는 그다지 진전되지 않는 듯 보인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화해의 노력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그 현상은 더 심각하며 치열하다. 작금의 한국 사회에 남남갈등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태극기’와 ‘촛불’의 대립은 정치 권에서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분단을 다르게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다르게 형성된 세력들 간의 신념과 감정이 충돌하여 만들어내는 파열음일 것이다. 남북 이데올로기 분단의 갈등과 분열이 사회 내적으로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통일국민협약’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두 세력 간의 대화와 소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갈등과 분열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만이 고민하는 주제는 아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민족과 인종, 종교와 정견의 차이 때문에 끝없는 갈등과 대립을 거듭하고 있음을 본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 인종청소와 무차별적 테러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자국우선주의와 극단적

세력이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는 추세여서 불안과 위협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평화를 갈망하는 한결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갈등과 분쟁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평화로 가는 길에 화해가 중요하고 더없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화해 없이 진정한 평화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화해의 중요성은 확연해진다.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화해는 평화 실현을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도 계기마다 화해를 선언하고 협력을 약속하며 평화를 향한 의지와 열망을 과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의 선언과 약속은 의미 있는 화해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처럼 거듭되는 화해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화해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절차 혹은 과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떤 상황과 구조적 맥락에서 화해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가를 이론과 현실의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화해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화해에 필요한 과정과 절차,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구조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화해의 이론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평가해 본다.

II. 화해를 설명하는 이론

1. 화해의 개념과 범주

화해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갈등관계에 있던 행위자들이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¹⁾ 즉 과거의 정서적, 인식론적 혹은 실질적 경험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어 미래에 더 좋은 관계가 보장될 때 우리는 그것을 화해라고 말한다. 이 개념정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화해는 현재나 미래보다는 과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해의 결과는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화해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갈등과 부당한 경험에 의해 생겨난 악의적인 감정, 의심 혹은 피해 등 주로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화해를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과는 다른 차원에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인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²⁾ 즉 실질적인 이익갈등이라는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갈등해결 과정과는 달리 과거의 폭력적 경험으로 형성된 부정적 감정과 정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을 화해라고 말한다.

이런 개념의 화해는 사실 매우 소극적이다. 화해를 조금 더 적극적 의미로 해석하는 톰 우드하우스(Tom Woodhouse)는 화해를 적대적 관계의 회복,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폭력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

1) "Reconciliatio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y 11, 2015), <https://plato.stanford.edu/entries/reconciliation/> (검색일: 2018.11.20), p. 1.

2) Johan Galtung, "The Four Components of Peace," Civil Peace Lecture, The Archbishop Desmond Tutu Center for War and Peace Studies, Liverpool Hope University (2013.1.28, The Capstone Theatre). <http://www.youtube.com/watch?v=JcqPOLqdRrg> (검색일: 2013.12.20).

는 것으로 정의한다.³⁾ 과거의 부정적 경험으로 형성된 적대적 감정을 극복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당면한 대립적 갈등과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소통, 협력하려는 태도와 가치를 화해라는 개념으로 포괄한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화해는 심도 있는 평화조성과 문화적 평화구축의 핵심이며, 평화구축 혹은 갈등해결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만큼 평화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된다.

스톱(E. Staub)과 바르탈(D. Bar-Tal)은 화해를 서로에게 적대적인 혹은 이전에 적대적이었던 집단구성원에 의한 상호 수용 및 그러한 수용을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가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회적 구조 및 심리적 프로세스라고 정의한다.⁴⁾ 그에 의하면 진정한 수용이란 서로에 대한 신뢰 및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 및 이익에 대한 민감성 및 고려를 의미한다. 켈만(H. Kelman)은 화해를 사회에서 갈등을 경험한 후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특히 정체성 변화 과정으로 정의한다.⁵⁾

크로커(Crocker)는 법이 준수되고 폭력이 부재하는 상태를 낮은 수준의 화해로, 서로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존중하고 인정하며 비전을 공유

3) Oliver Ramsbotham, Tom Woodhouse and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Thir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1), p. 246.

4) Ervin Staub and Daniel Bar-Tal, "Genocide, Mass killing and Intractable Conflict: Roots, Evolution,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s.,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832-733. 박주화, 『한반도 평화연구(2): 평화담론과 평화인식의 간극과 함의』(서울: 통일연구원, 2019년 출간예정)에서 재인용.

5) Herbert C. Kelman, "Reconciliation from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eds., Arie Nadler, Thomas E. Malloy and Jeffrey D. Fish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박주화, 위의 책, 재인용.

하는 상태를 더 높은 수준의 화해로 정의한다. 빌라비센치오(C. Vila-Vicencio)는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고 공존하는 상태에서 관계회복과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하는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화해의 과정을 설명한다. 로스(Ross)는 폭력이 종결되는 정도의 상태를 약한 화해로, 과거 적대 관계가 변화되어 상호교류가 건설적으로 진전되는 경우를 강한 화해로 정의한다. 독일과 폴란드의 화해를 연구한 히(He)는 집합기억과 민족 서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따라 화해가 얕은 단계에서 깊은 단계로 진전되는 것으로 분석한다.⁶⁾

이처럼 화해의 의미는 소극적 개념에서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네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장 소극적으로 현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화해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적이지 않은 현 상황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로서 다소 부정적 개념이긴 하나 평화형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둘째는 경제적 상황을 참는다는 의미에서 화해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상황이 치명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만 않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화해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셋째는 다양한 주체 혹은 상반되는 주체를 서로 연결하는 행위로서 화해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서로 모순된 상황에 직면한 당사자가 공존해야 하므로 서로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다. 마지막 넷째로 과거에 적대적이었던 대상들 사이의 관계개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관계를 조정하고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정서적 공간창출이 필요한 영역이다.

화해를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더 나은 관계로

⁶⁾ 천자현, “화해의 국제정치: 화해 이론의 발전과 중일관계에 대한 비판적 적용,”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2013), pp. 11-13.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때,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미래의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 이른다. 특히 과거의 잔혹한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난제에 부딪힌다. 르완다나 유고슬라비아처럼 내전으로 대량학살을 경험한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바로 폭력적 갈등을 겪은 사회가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고민을 담고 있다.

화해는 이행기 정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갈등 후 평화구축이나 제도화, 또는 민주화과정에서 과거사(국가기관에 의한 폭력) 처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화해를 논의하는데서 이행정의에 관한 기존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즉 응징적(retributive) 접근과 화해적(reconciliatory) 접근, 이들을 결합한 전체론적(holistic) 접근이 그것이다. 응징주의자의 핵심 주장은 범법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입장이다. 과거의 잘못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제대로 다루어야만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그러나 화해적 접근, 회복적 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도한 처벌대신 화해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대표적인 사례로 과도기적 정의를 세우는데 있어서 화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체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TRC)를 구성, 과거의 범죄를 밝히되 미래를 위해 화해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화해는 이전에 갈등을 경험한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관계개선을 의미한다. 상대방과의 관계개선은 상호작용의 패턴, 상대방에 대한 태도, 상대방에 대한 기대 및 신념으로 구성된다. 화해를 주제로 다루는 연구는 관계개선의 범주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외적 행동의 변화다.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의 중단, 상대방과 긴밀한 협조 능력, 상대방과의 협력 증가, 공유된 기관 또는 관행에 대한 참여 등이 그 예다. 둘째, 신념의 변화다.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도덕적 가치가 낮다는 믿음의 버리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믿음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에게 불리한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셋째, 부정적 감정과 태도를 해소하는 것이다. 단순히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공포, 증오 또는 분노를 극복하고,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넷째, 긍정적 감정과 태도의 수용이다. 상호 존경, 연민, 사랑, 정체성의 공유 또는 연대, 공동규범의 공유 또는 상호 신뢰에 대한 헌신 등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화해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두 당사자 간의 관계 중 어느 것이 화해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당사자가 단순히 친구관계인지, 아니면 직장관계인지, 혹은 종교집단의 일원인지를 밝혀야 어느 부분에서 화해가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관계의 수준이 개인과 소그룹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와 같은 큰 단위의 관계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신념과 태도 변화가 화해를 다루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집단의 성격과 수준을 명확히 해야만 화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화해의 과정과 절차

화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화해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대체로 화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요소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거나 화해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9단계 혹은 12단계로 설명한다. 레더라크(Lederach)의 경우는 화해의 핵심요소로 진실, 자비, 정의, 평화의 네 요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롱(W. Long) and 브레케(P. Brecke)는 화해를 위해 양측의 행위에 대한 진실 말하기(truth telling),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필요로 하는 용서, 보복에 대한 포기, 완전한 정의, 새로운 긍정적 관계 형성 등의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함을 주장한다.⁷⁾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개념으로 화해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대체로 배려, 안보, 존중과 인정, 협력 등을 기본개념으로 설명한다.

스탠포드 사전은 사과—추모—진실확인—사면—재판과 처벌—법적과거말소—배상—용서—참여 등 9단계의 과정으로 화해를 설명한다.⁸⁾ 적대적 관계에 있는 행위자 간 화해는 서로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는데서 시작됨을 강조한다. 사과와 추모를 통해 어느 정도의 화해가 진전되면 진실확인 작업을 통해 화해를 더 증진시켜 나간다. 진실확인 이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면과 처벌, 배상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적극적 화해의 과정에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용서를 통해 신뢰의 회복과 정서적 화해를 도모해 나가며, 행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화해가 완성되는 그림을 보여준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화해를 위해 12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⁹⁾ 1) 모든 사람(집단)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면죄부

7) William J. Long and Peter Brecke, *War and Reconciliation: Reason and Emotion in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MA: MIT Press, 2003; 박주화, 『한반도 평화연구(2): 평화담론과 평화인식의 간극과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19년 출간예정)에서 재인용.

8) "Reconciliatio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y 11, 2015), <https://plato.stanford.edu/entries/reconciliation/> (검색일: 2018.11.20.), pp. 5~12.

9) Johan Galtung, "After Violence,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Resolution," in Mohammed Abu-Nimer eds., *Reconciliation, Justice Coexistence: Theory & Practice* (New York: Lexington Books, 2001), pp. 3~23. 박주화, 위의 책, 재인용.

접근,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배상과 보상, 3)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 4) 가해자의 죄책과 참회(기독교적 접근), 5) 재판과 처벌, 6) 모든 사람이 가해자임을 강조하는 불교적 접근, 7) 사실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접근하기, 8)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진실과 공개 접근, 9)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 기념일, 기념 공간 마련으로 힐링, 10) 갈등집단이 함께 재건노력, 11) 정치적 엘리트에 의한 협상과 문제 해결, 12) 복합적 접근 등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9단계로 진행되는 12단계로 진행되는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복합적 과정과 절차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모든 요소와 단계가 중요하지만, 화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시작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화해의 시작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apology)에서 출발한다는데 동의한다.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상대에게 인정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사과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전되지 못하고 사과 단계에서 맴도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정성이 담긴 사과라면 응당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과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잘못에 대한 뉘우침의 표현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듯이 그 실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실수가 있었다”라든가, “유감을 표한다”라는 정도로는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반드시 명확하고 진실된 사과를 해야만 화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문화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과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잊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혹은 과거를 인정하더라도 가볍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때로는 화해를 위해 효과적일 수도 있다.¹⁰⁾ 구체적 행동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 속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을 가능

성도 있다. 무엇을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가는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갈통이 제안하듯 피해자의 관점에서 화해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접근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거나 유무형의 피해보상을 하기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의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화해를 위해 결정적이다. ‘누가 가해자인가?’라는 시각보다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화해를 위해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 즉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who is guilty)가 아니라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who is harmed) 라고 질문하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다.¹⁰⁾ 따라서 화해를 가능하게 하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험한 사건을 말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효과적이다. 서로의 경험을 말하고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공감도 생겨나고 사과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추모(memorials)는 기념비, 박물관, 아카이브, 비극적 사건의 장소 보존, 행사, 교육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이러한 기념비와 활동은 과거의 사건을 보존하고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가해자가 흑시라도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과거의 집단기억을 보존함으로써 집단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념행사는 가해자 집단에게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를 존중하며 그러한 불법 행

¹⁰⁾ David P. Barash and Charles P. Webel 지음, 송승종·유재천 옮김, 『전쟁과 평화』 (서울: 명인문화사, 2018), p. 575.

¹¹⁾ Eastern Mennonite University의 Carl Stauffer 교수와의 면담, 2012년 5월 21일, 미국 버지니아주. 누가 책임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 가해자와 국가 두 행위자 밖에 없지만, 누가 피해자냐 라고 질문하면 관련자(stakeholder)는 가해자와 국가,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네 행위자로 늘어나기 때문에 화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책임과 처벌은 실체(특정인이나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처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대부분 처벌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여 교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처벌과 문책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기능한다.

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돕는다. 피해자에게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킴으로써 자존감을 북돋워준다. 그러나 이러한 추모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냉소적으로 비쳐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모의 의미가 달라지고 재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서 추모를 한다고 하여 화해가 자동적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절차는 진실규명(truth-finding)이다. 과거 사실에 대한 소통과 규명은 화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들은 과거에 발생한 중대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때문에 희생자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고통을 겪었고 누가 그러한 폭력적 행동을 저질렀는지, 누가 그러한 명령을 내렸는지, 어디에 시신이 묻혀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진실규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존자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며 중요한 과정이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기 입장에서 진실말하기(truth-telling) 혹은 경험진술(story-telling)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술할 때 피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양측의 진술을 통한 진실규명과 책임소재(accountability)를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를 설치하여 공개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절차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어떻게 진실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어려운 과제다.

진실확인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는 단계로 나아간다. 사면(amnesty), 재판과 처벌(trials and punishment), 법적 과거 말소(lustration), 배상(reparation) 등은 화해의 과정에서 거치는 법적 절차다.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면제해주는 사면은 분쟁의 종식이나 화해의 촉진을 위해 사

용한다. 그러나 사면은 자칫 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기소와 처벌은 법의 지배와 규범적 표준을 재확인해 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화해에 기여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성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처벌이 과거의 진실확인 차원이 아닌 범죄자의 죄책감을 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거나 사법제도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화해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 과거 말소는 이전의 억압 정권과 협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을 조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말한다. 배상은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물질적 보상 외에 사과나 진실말하기와 같은 행위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배상은 사망이나 부상과 같이 대체가 불가능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여서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성의가 담긴 최소한의 물질적 배상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담보해 주며 희생자에 대한 존중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다. 그러나 소중한 인명의 손실을 돈이나 다른 물질적 상품으로 상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용서는 화해의 마지막 관문이다. 화해한다는 것은 과거의 폭력으로 발생한 파괴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행위이다. 파괴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 잘못을 행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그 결과의 희생자로 머물로 말 것이다.¹²⁾ 화해한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피해와 상처를 용서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위해 화해는 필수 요건이다. 용서는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악순환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반

¹²⁾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1996), p. 301; 이승훈, “화해의 조건: 동감과 용서의 정치성,” 『현상과 인식』 43(1) (2019), p. 72에서 재인용.

전의 기적을 내장하고 있는 능력이다.¹³⁾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다.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고 화해할 수 있는지, 혹은 화해하지 않고 용서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이 용서를 거부하면 화해는 불가능한 것인가? 용서를 하지 않고도 화해를 할 수 있는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용서를 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거부하면 그 용서는 가짜인가?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은 범죄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만약 범죄자들을 그냥 용서해주게 되면 잔혹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서를 하지 않고도 화해를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영역에서 화해와 용서의 가치는 회의론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독재자와 전쟁을 저지른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공격성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화해라는 가치를 종종 립서비스 정도로 사용한다. 독재자와 전쟁광들이 화해라는 말을 상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해의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난다. 비판론자들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희생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희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화해가 무엇인지 명확한 내용과 확실한 규범적 표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화해는 무기력한 가치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화해는 끝으로 여러 관계회복 증진 활동에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과, 진실확인, 기

13) 이해완, “용서와 화해, 그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으로 가는 길,”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서울: 명인문화사, 2018), p. 49.

넘비 추모, 배상 등 모든 과정에 희생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나 두려움을 털어내는 기회를 얻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만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가해자도 피해자 배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미래에 더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어떤 경우는, 특히 정치적 갈등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화해의 최종 과정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의 노력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가치 있는 행위이며 평화롭고 공정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실질적 규범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Ⅲ. 화해의 공간과 구조

1. 가치의 충돌 -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

앞에서 화해가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하였지만 우리가 화해의 대상으로 다루는 현재의 갈등은 말처럼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또 위에서 설명하듯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도 않는다. 갈등의 특성에 따라 어느 부분에 멈춰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은 해결하기 힘든 여러 문제들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어서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점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구조는 여러 집단의 요구와 상호 모순되는 가치들이 충돌하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화해의 대상으로 다루는 갈등의 공간은 상당부분 인접한 집단

들 간에 발생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갈등집단은 지리적으로 근거리에서 살고 있고 분쟁이나 폭력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되어 있어서 적대감과 원한의 역사가 뿌리 깊게 내려 있다.¹⁴⁾ 따라서 모든 갈등하는 집단은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가는 ‘잘 아는’ 사람들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들 사이에 분쟁과 폭력이 반복하면서 적대적인 상호작용의 악순환이 구조화됨으로써 상호 간에 적개심과 공포, 그리고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그 갈등은 실질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라는 두 차원을 함께 갖고 있다. 갈등의 주장처럼 표면적으로 실질적인 이익갈등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심층에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은 냉혹한 정치세계에서 권력다툼과 군사적 문제, 경제적 이익이라는 실질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를 중시하는 평화학자들은 갈등 이면에 깔려 있는 트라우마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화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실질적 이익갈등을 적당히 협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천의 개발, 혁신을 요구한다.¹⁵⁾ 트랜센드라는 초월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갈등의 복합성을 풀어낼 수 없다.¹⁶⁾

레더라크(J. P. Lederach)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모순적인 가치들이 충돌하는 곳이라 보았다. 즉 진실과 자비가 충돌하고, 정의와 평화가 부딪히는 장소인 것이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자비는 받아들임, 용서, 지지, 연민, 힐링을 말하며, 진실은 과거에 대한 열린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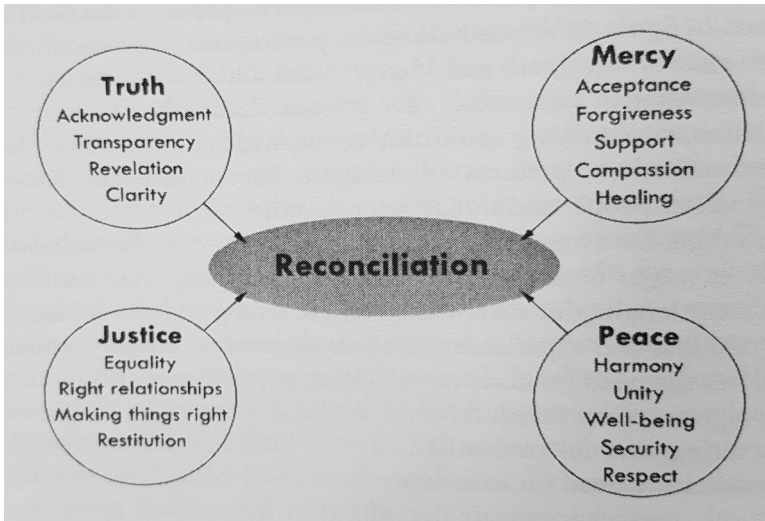
14) Lederach, J. P.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SIP, 1997, p. 23; 존 폴 레더라크 지음, 김동진 옮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2012), p. 48.

15) 레더라크 지음, 김동진 옮김, 위의 책, p. 51.

16) Johan Galtung, “Transcend: Methods and Solutions,” *Alternate Focus* (2011.1.26). <https://www.youtube.com/watch?v=j0KHBhrbffQ>

사, 인정, 투명성을 의미한다. 정의는 평등, 바로잡음, 배상 등을 포괄하며, 평화는 조화, 일치, 안전, 존중, 웰빙 등을 포함한다. 이 네 가치가 만나는 곳이 화해이니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진실은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손실과 경험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수용과 초월, 새로운 시작의 필요성을 원하는 자비와 짝을 이루어야 한다. 정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 사회의 재구성, 손해배상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는 상호 의존성, 삶의 행복과 평안,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평화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순된 가치들을 구약성서 시편 85편 10절을 인용하며 “공훈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는” 공간으로 승화시켜야 함을 강조하지만, 엄연한 현실은 모순된 두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이다.

〈그림 1〉 화해의 공간



자료: J. P. Lederach,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SIP, 1997), p. 30.

이처럼 화해의 현장은 역설적인 주제를 다루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화해가 전반적으로 고통스러운 과거를 털어놓는다는 하나의 측면과 상호 의존적이며 장기적인 미래를 추구한다는 다른 측면 사이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화해는 양립하기 어려운 진실과 자비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정의와 평화 모두에게 잘못을 수정하면서 동시에 서로 연결된 공동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화해의 기본 패러다임은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레더라크는 이 난제를 풀어내야 하는 작업이 화해임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매우 창의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풀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갈등만을 보지 않고 그 갈등을 야기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레더라크에 의하면, 갈등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대한 하나의 체계이므로 그 체계 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화해가 가능하다. 그 관계 안에서 갈등하는 집단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재의 역할이 바로 화해인 것이다. 화해를 위해서는 갈등하는 두 집단이 상호 배타적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존재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람들은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슬픔, 불의에 대한 기억과 고통을 동반하는 분노를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인정(acknowledge)은 화해의 역학 관계에서 결정적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경험과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며 관계회복을 향한 첫걸음이다.¹⁷⁾

2. 중층적 화해의 구조

화해는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준에 따라 개인-집단으로 나누어 보기도

17) 레더라크 지음, 김동진 옮김, 위의 책, p. 52.

하고, 국가-시민사회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의 과정과 집단과 집단이 해결해야 하는 화해의 과정은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화해와 시민사회 수준에서 해결해야 하는 화해는 문제의 성격이 조금 다를 것이다.¹⁸⁾

레더라크는 화해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준에 따라 세 층위로 구분한다.¹⁹⁾ 맨 상층에 정치·군사·종교의 고위 지도자 수준이 있다. 대체로 화해는 갈등과 분쟁을 종식하는 휴전에 초점을 맞추어 매우 인지도가 높은 지도자들 간에 고위층 협상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매우 소수이다. 주요 대중적 관심은 지도자에 쏠린다. 대중적 관심은 지도자의 기반과 정당성을 강화하므로 지도자는 집단의 문제를 대변하기 위한 측면과 지도자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대중적 지도자 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대중적 지도자에 못지않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있다. 가시적 지도자 간의 협상을 통해 얻어진 평화조약이 계급구조상의 대표자들과 그들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존재로 사회 내부는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화해가 진행된다.

그 아래로 학자·지식인·종교 분야에서 중간 수준의 지도자 간 화해가 있다. 널리 존경받는 개인, 또는 교육·상업·의료와 같은 분야의 지도적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집단과 학문기관, 인도주의

18) 국가 간 화해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보는 국가이익론적 접근,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는 제도론적 접근, 구성주의적 관점의 상호인식론적 접근, 징벌적 정의를 강조하는 국제정의론적 접근, 회복적 정의를 강조하는 용서론적 접근 등 다섯 가지 화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천자현, “화해의 국제정치: 화해 이론의 발전과 중일관계에 대한 비판적 적용,”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2013), pp. 14~28.

19) Lederach, *Building Peace*, pp. 37~55; 레더라크 지음, 김동진 옮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pp. 66~74.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때로는 유명한 시인이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같은 인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간 수준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화해는 문제해결 워크숍이나 갈등해소 트레이닝 혹은 평화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참여함으로써 진행된다. 중간 수준의 지도자들은 위로는 최고위층 인사와도 연결이 되고 아래로는 풀뿌리 지도자와도 긴밀한 연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고위층 지도자들처럼 정치적 계산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풀뿌리 지도자들과는 달리 주민들의 생존문제에서 자유롭게 때문에 중간 수준 지도자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맨 아래에는 지역지도자, 원주민 NGO지도자, 공동체 개발자, 지역보건공무원, 난민캠프지도자 등 풀뿌리 지도자들 사이에 진행되는 화해이다. 풀뿌리 지도자는 대중과 사회의 근간을 대표한다. 이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때로는 음식과 물, 피난처, 안보를 직접 해결해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역정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으며 갈등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최고위층 지도자나 중간 수준 지도자와는 달리 풀뿌리 지도자들은 매일의 삶을 통해 뿌리 깊은 증오와 적대감을 가장 먼저 목격한다. 이 풀뿌리 지도자들 간의 대화에는 지역평화위원회와 트라우마 치유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며 다수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화해를 진행한다.

앞에서 설명한 화해의 과정을 구조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²⁰⁾ 즉 폭력을 종식하는 단계,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 대립을 관리하는 단계, 다름을 인정하는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분리를 단행해야 한다. 패자는 승자를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 달라진 상황과 빨리 타협하기를 원한

²⁰⁾ Oliver Ramsbotham, Tom Woodhouse and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Thir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1), pp. 258~261.

다. 그러나 승자는 상황과 타협하기를 원치 않고 패자에 뭔가 더 처벌이 가해지기를 바란다. 더욱이 패자가 아직 완전히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승자는 패자와 화해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경우 당사자 간의 분리가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타협할 수 없는 갈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양 당사자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자기는 피해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한 더 깊은 화해의 단계로 들어가는 어렵다. 양측이 모두 피해자라는 사실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던 데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양측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정치적, 경제적 요구와 차이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참여와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통해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과거 적대적이었던 상대를 포용하거나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갈등하던 당사자 간에 차이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과정이다. 서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문화에 따라서는 속죄와 용서가 수반되기도 한다. 상대에 대한 과거의 관념을 수정하고 상대를 인간으로 받아들이며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

IV. 화해의 쟁점과 성찰적 논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다른 요구와 이해로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감정과 정서를 제대로 다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며 일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만 화해가 가능하다. 또 화해의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의 수준, 즉 개인 혹은 시민사회, 국가체제나 국제기구 등 행위자의 수준에 따라 화해의 성격과 해결방법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화해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면 화해를 위해 진실규명이나 가해 책임의 확인과 처리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며, 평화구축이나 민주화 같은 체제전환의 흐름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최적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각각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질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질문은 몇 가지 보다 근본적인 쟁점과 연관되어 있다.

첫째는 분리와 융합의 문제다. 화해를 위해 당사자들의 분리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멋진 담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듯이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지구화 시대에 국가나 집단은 점점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상대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분리를 통한 안정을 추구하고 시간의 진전에 따라 융합으로 나아가는 것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정체성의 분리와 융합 사이에서 무엇이 화해에 도움이 되는가는 갈등의 상황과 맥락, 그리고 화해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실체와 관계의 문제다. 갈등과 폭력의 원인을 당사자의 본질적

문제나 존재의 문제로 보는 입장과 어그러진 관계의 문제로 보는 입장이 대립한다. 실제적 변화와 관계의 개선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 실제적 변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진실확인과 정의 실현에 더 무게를 두고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반면,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용서와 평화실현에 더 무게를 두고 화해를 시도한다. 레더라크가 설명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가시적으로 충돌하는 정의와 평화, 진실과 자비는 바로 실체와 관계의 시각이 서로 부딪히는 곳이다. 실체(본질)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는 정의와 진실이 관계를 더 중시하는 평화와 자비와 만나기 때문에 그만큼 해결하기도 어렵다.

셋째, 그렇다면 화해는 정의와 평화 사이에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정의는 과거의 잘못에 부합하는 형벌을 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미래의 좋은 관계를 가져오는 데 관심을 둔다.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형벌을 가함으로써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관계개선과 화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가 처벌의 방법을 회피할 때 정의와 화해의 충돌이 일어난다. 체제전환 사회에서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지 않고 화해를 추진하면 상당한 도덕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는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어서 정의와 화해를 한꺼번에 실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표 1〉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사이에 있는 정의

소극적 평화	정의	적극적 평화
폭력의 부재	법치 진실위원회, 재판 배상, 분배정의	장기적 화해

자료: Oliver Ramsbotham, Tom Woodhouse and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Thir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1), p. 251.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관계회복과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관계를 더 중시하는 입장이지는 하나 궁극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범죄를 단순히 가해자의 잘못으로만 보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범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접근한다. 따라서 처벌 위주의 해결방법보다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상금지급이나 대면대화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쪽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넷째, 트라우마 치유와 화해의 문제이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감정인 트라우마가 화해의 과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갈통이 주장하듯 과거의 폭력적 경험으로 형성된 부정적 경험과 감정이 화해를 방해하므로, 이 부정적 경험과 감정을 제대로 다루어야만 화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적극적 화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익갈등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 화해를 증진하고 서로를 결속하는 힘은 경제적 이익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헤이너(P. Hayner)는 화해증진을 위해 관련 집단이나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개발사업이나 재건사업 같은데 양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²¹⁾ 심리·정서적 트라우마 치유 못지않게 구조적 차별 해소와 이익공유가 화해증진에 중요하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화해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주제다. 갈등과 분쟁 이후 화해를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21) Priscilla B. Hayner 지음, 주혜경 옮김, 안병욱 해제,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서울: 역사비평사, 2008), pp. 286~289; 차승주.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내용으로서 ‘화해’에 대한 이론적 고찰,” 『평화학연구』 제20권 3호(2019), p. 38 재인용.

과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응당한 벌을 주고 보상을 받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경우, 과거의 사건을 용서하고 잊어버리자(forgive and forget)는 ‘기억지우기’(amnesia)가 화해를 위해 전진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화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공식적 기억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진실화해위원회처럼 과거에 대한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는 방법과 국가적 차원에서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사면해주는 방법 사이에 ‘제3의 길’ 처방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상황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는 잊어버리는 방법이 화해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도 화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적절히 보복하는 것이 화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보복의 법칙처럼, 생명에는 생명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철저한 보상의 법칙을 적용하면 정의가 보장되고 사람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사법적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와 문화에 따라 원칙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²²⁾

22) Oliver Ramsbotham, Tom Woodhouse and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Thir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1), p. 250.

V. 한반도에의 적용: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화해의 이론으로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화해가 언급되는 맥락은 분단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화해, 식민지 유산의 청산 및 극복과 관련한 화해,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국가폭력 희생자들과의 화해, 사적 인간관계에서 겪는 상처로부터의 해방 및 트라우마 해소 차원에서 논의되는 화해 등으로 나뉘 볼 수도 있다.²³⁾ 그러나 한반도의 갈등해소와 화해의 문제는 각 영역이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고 혼재되어 있다. 20세기 식민통치 유산으로 남겨져 있는 남북분단의 문제는 식민지 유산의 청산과 직결되어 있으며, 분단체제 하에서 분단을 명분으로 국가가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단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진 남북의 구성원들에게 심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주고 있어서, 크게 보면 한반도에서 화해는 분단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느냐 하는 주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간 남북이 화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과 1991년 12월 13일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 그리고 2018년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까지 남과 북이 화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제안을 하고 협력을 추진하였다. 그 때마다 남북 간에 가로 놓인 갈등과 골 깊은 감정이 작동하여 대화가 깨어지고 말았지만, 상호인정과

²³⁾ 박명규, “평화와 화해: 책임정치와 심정윤리의 간극과 긴장,”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한반도 분단과 통일을 중심으로』(제57차 KPI 한반도평화포럼, 2018. 3.19).

미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관계회복과 화해의 첫걸음으로서 중요한 상호인정 부분에 관하여서는 남북이 국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91년 12월에 타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합의가 아직은 후속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아 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시민사회 수준으로 내려오면 남과 북에서 각각 54%와 50%의 주민들이 상대를 서로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²⁴⁾ 남북에서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화해의 첫걸음은 썬 셈이다. 분리와 융합의 측면에서도 남과 북이 분단평화에 머물지 않고 통일을 통한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통합의식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화해의 잠재력은 크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남북한은 아직 구체적으로 화해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화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분단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화해를 시작해야 할텐데, 그 부분에 관하여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200만 명이 살육을 당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전쟁을 어떻게 겪었는지 각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경청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²⁵⁾ 남과 북의 지도자가 화해의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도 과거 한국전쟁 당시 서로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한의 현충원과 북한의 애국열사릉을 상호 방문하여 상대 피해에 대해 조의를 표하며 화해의

²⁴⁾ 2019년의 경우, 남과 북에서 각각 10.8%와 29.3%가 상대를 ‘적’으로, 17.0%와 11.2%는 ‘경계’ 대상으로, 13.5%와 6.0%는 ‘지원’ 대상으로, 54.0%와 50.0%는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국인 대상 『통일의식조사』와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주민의식조사』 참조.

²⁵⁾ 김병로, 『다시 통일을 꿈꾸다: 한반도 미래전략과 ‘평화연합’ 구상』(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7), pp. 173~177.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남북의 화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피해만이 아니라 상대의 피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확인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실확인 작업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누가 전쟁을 먼저 일으켰는가 하는 차원의 사실 확인이 아니라,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라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실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과 북이 입은 피해를 서로 정확히 파악하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켜 사과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사실 남과 북은 한국전쟁을 각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겪었는지 국가수준이나 시민사회 수준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측 모두 자기의 피해만 학습하고 있을 뿐 상대의 피해는 전혀 모른다. 자기의 피해가 너무 커서 상대의 피해를 알아볼 여유가 없었던 탓일 수도 있고, 상대의 피해를 파악해 보려는 시도 자체가 '불온'한 것으로 오해받을 염려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²⁶⁾

진실확인 다음에는 서로에게 가한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남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묵시적으로는 서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공감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린다. 6.15공동선언이나 판문점선언 등 남북의 국가적 선언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보다는 미래지향적 관계개선과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부딪쳐도 관계가 금방 깨어지고 만다. 사실 남북 간에는 무엇을 어떤 수준에서 사과해야 하는지도 진지하게 성찰해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26) 김병로 · 서보혁 편, 『분단폭력』 (서울: 아카넷, 2016).

이런 점에서 독일의 경험은 화해의 교과서와도 같다. 1970년 폴란드를 찾은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과거에 대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였다. 독일과 폴란드의 화해는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됐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행위가 화해의 시작이라는 이론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나아가 배상과 보상을 실천함으로써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전쟁으로 폴란드에 빼앗긴 땅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었고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40억 유로를 배상했다. 지도자들의 사과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하여 신뢰를 쌓아갔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사회 안에서도 진행되어 과거의 잘못을 알리는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하고 공동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작업도 추진하였다.

과거의 잘못을 어느 정도로 공개해야 화해에 도움이 되는가는 문화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진실과 정의가 화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진행되는 화해의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전쟁의 학살 문제와 전후 지속된 KAL폭파,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으면 미래에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반드시 처벌하여 폭력의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는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되 용서한다’는 회복적 정의의 정신으로 진실·정의를 자비·평화와 융합하는 방식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한편으로는 응당한 처벌을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두 마음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지도자 간의 화해와 시민사회 구성원들 간의 화해라는 두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지도자 수준에서는 여러 공동선언으로 화해의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중간지도자 수준이나 풀뿌리 지도자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부재하였다. 제주 4.3사건과 광주5.18민주화항쟁 등 국가폭력 갈등이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진상조사와 보상을 진행하며 화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향후 평화조약 체결과 통일국가 구성이 국가지도자 수준에서는 쉽게 타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차원으로 내려오면 그 안에서 대립과 갈등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1989년 이후 최근까지 국제적으로 49건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으나 평화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현실이 시민사회 내 화해의 어려움을 말해준다.²⁷⁾ 국가수준에서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였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사회는 더 치열하게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점에서 화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지도자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 집단적, 제도적 역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화해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무용한 것이다. 실행할 역량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화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는 비관주의로 흐르기 십상이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여러 현실 사안에서 이런 현실주의 입장만을 고려하면 갈등의 악순환을 벗어날 계기를 찾기 어렵게 된다. 남북이 과거의 폭력으로 입힌 파괴와 상처를 용서하는 높은 단계의 화해로 나아가려면 국가와 시민사회 역량이 훨씬 축적되어야 한다. 용서를 통한 화해의 증진을 위해서는 레더라크가 주장하는 도덕적 상상력, 즉 폭력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기존

²⁷⁾ Oliver Ramsbotham, Tom Woodhouse and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Thir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1), pp. 172-173.

관행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롭고 건설적인 관계의 유형을 만드는 역량 증진이 필요하다.²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기존의 질서나 구조를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폭력으로 사회관계가 깨뜨려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쉽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화해의 과정은 매우 어렵다. 화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 폭력의 가해 집단에 어느 만큼의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화해는 필요하며 진실을 밝히는 작업과 그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화해의 역량은 평화로운 미래의 관계를 위해 더없이 필요하다.

■ 접수: 2019년 10월 31일 / 심사: 2019년 11월 28일 / 게재확정: 2019년 11월 29일

²⁸⁾ Lederach, J. P., *The Moral Imagination: The Art and Soul of Building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참고문헌】

- 김병로. 『다시 통일을 꿈꾸다: 한반도 미래전략과 ‘평화연합’ 구상』.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7.
- 김병로 · 서보혁 편. 『분단폭력』. 서울: 아카넷, 2016.
- David P. Barash and Charles P. Webel 지음, 송승종 · 유재천 옮김, 『전쟁과 평화』. 서울: 명인문화사, 2018.
- 라사 셔크 지음, 김가연 옮김. 『전략적 평화세우기: 정의와 평화를 위한 비전과 틀』. 춘천: 대장간, 2014.
- 박명규. “평화와 화해: 책임정치와 심정윤리의 간극과 긴장,”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한반도 분단과 통일을 중심으로』(제57차 KPI 한반도평화포럼, 2018. 3.19).
- 박주화. 『한반도 평화연구(2): 평화담론과 평화인식의 간극과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19년 출간예정.
- 이승훈. “화해의 조건: 동감과 용서의 정치성,” 『현상과 인식』 43(1) (2019), pp. 59~80.
- 이해완. “용서와 화해, 그 불가능에서 가능성으로 가는 길,”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서울: 명인문화사, 2018, pp. 3-52.
- 전우택 외.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서울: 명인문화사, 2018.
- 존 폴 리더라크 지음, 김동진 옮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2012.
- 차승주. “평화 · 통일교육의 핵심 내용으로서 ‘화해’에 대한 시론적 고찰,” 『평화학 연구』 제20권 3호(2019), pp. 33-51.
- 천자현. “화해와 국제정치: 화해 이론의 발전과 증일관계에 대한 비판적 적용,”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2013), pp. 7~38.
- Barash, David P. and Charles P. Webel. *Peace & Conflict Studies*. Fourth Edition,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Inc., 2018.
- Galtung, Johan. “After Violence,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Resolution,” in Mohammed Abu-Nimer eds., *Reconciliation, Justice Coexistence: Theory & Practice*. New York: Lexington Books, 2001.
- Galtung, Johan. “Transcend: Methods and Solutions,” *Alternate Focus* (2011,1,26).

- <https://www.youtube.com/watch?v=j0KHBhrbffQ>(검색일: 2013.12.20).
- Galtung, Johan. "The Four Components of Peace," Civil Peace Lecture, The Archbishop Desmond Tutu Center for War and Peace Studies, Liverpool Hope University (2013.1.28, The Capstone Theatre). <http://www.youtube.com/watch?v=JcqPOLqdRrg> (검색일: 2013.12.20).
- Kelman, Herbert C. "Reconciliation from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s," in Arie Nadler, Thomas E. Malloy and Jeffrey D. Fisher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Lederach, J. P.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SIP, 1997.
- Lederach, J. P. *The Moral Imagination: The Art and Soul of Building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Ramsbotham, Oliver, Tom Woodhouse and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Thir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1.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conciliatio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y 11, 2015), <https://plato.stanford.edu/entries/reconciliation/> (검색일: 2018.11.20).
- Staub, Ervin and Daniel Bar-Tal, "Genocide, Mass killing and Intractable Conflict: Roots, Evolution,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in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A Path to Reconciliation : Condition, Process and Structure

Kim, Phil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aising a question of why reconciliation does not progress and revolves in vai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ims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conditions, procedures or processes that enable reconciliation, and apply it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explains in the theoretical review that reconciliation requires key elements such as recognition of mutual damage, apology, memorials, truth-finding, reparation, and forgiveness, and it is desirable to proceed with a series of procedures and processes. However, the place where reconciliation takes place is a paradoxical and dynamic scene, so it must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and the fundamental subjects such as separation-fusion, entity-relationship, interest-emotion, and alternative reconciliation also need to be carried out in reflective way. In light of these theories, the two Koreans partially reconciled the recognition of mutual existence and the improvement of future-oriented relations. However, the initial reconciliation process such as recognition of mutual damage, apology, and truth-finding has not yet begun, and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needs to begin at the level of civil society beyond the state.

Keywords: Reconciliation, Peace, Restorative Justice, Truth-Finding, Apology, Forgiveness, Trauma Healing

김병로(Kim, Philo)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부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럿거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을 거쳐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및 북한연구소장,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겸임교수, 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KBS자문위원 및 북한연구학회 22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 민화협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Two Koreas in Development*,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 개성공단』(공저), 『분단폭력』(공저),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다시 통일을 꿈꾸다』 등이 있다.

